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산지원기금 설치〉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8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출산지원기금 설치(별표 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출산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 설>	- 별표 2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 (출산지원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출산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출산지원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기금명	출산지원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제8조에 따른 대출원금 상환 지원 ◦ 제9조에 따른 이자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상환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산지원대출법안”이라 함)은 출산지원대출²⁾의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2) 출산지원대출법안에 따르면 “출산지원대출”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로 규정하고 있음.

출산지원금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 비용을 140.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에 대해서도 93.7%³⁾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 예상⁴⁾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은 출산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출산지원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대출 지원과 출산율 제고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실증 연구 등이 부족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⁵⁾가 있고, 정부출연금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낮으므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다소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58.7%, 매우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35.0%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2023. 12.

5) 헝가리에서 ‘미래아기대출’ 등을 시행하였으나 출산율 반등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 대출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 불분명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6)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전입금’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 등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의 재원을 정부 등의 출연금, 융자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에서 출산지원기금의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혼 무자녀 가구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현재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출산지원대출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